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48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1] 2021. 2. 1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총칭하여 '원고등'이라 한다)에게[2]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각[3] 부과처분(이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시가'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원고는 청구취지에 '원고등에 대하여'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상 원고와 선정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3)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추징금액 합산액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1999. 12. 19. 소유하던 C의 중요민속자료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을[4] 설립하고 E박물관을 등록하였으며, 2011. 10. 31. 박물관 및 부속토지를 이 사건 재단법인에 증여하였는데, 그 부속토지 중 ○○○시 F, G, H 내지 I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농지인 까닭에 재단법인이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B의 소유로 남아있다가 2011. 12. 16. B이 사망함에 따라 아내인 J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여 왔다.

나. 원고등은 형제지간으로 위 박물관의 공동관장이었던 어머니 J이 2017. 12. 2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2018. 2. 12.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액 중 100분의 85를 감경받았다.

다. 원고등은 ○○○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2019. 5. 24. 해산결의가 이루어졌고, 2019. 8. 21. 청산종결등기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라. 원고등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규정한 매각·증여라 함은 종전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목적인 감면받은 박물관 부지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주변 박물관 부지를 협의매수에 따른 매매계약이 위 조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5)]

나. 원고등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등이 그 취득일인 2017. 12. 29.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19. 7. 31. ○○○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등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처분사유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에 대하여

5)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E박물관의 부속토지로 박물관의 진입, 보수, 이용 등을 위해 필수적인데 위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재산인 박물관 부지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시가 효율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인바,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당초 취득세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추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6)]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추징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취득한 ○○○시가 원고등이 신고한 감면요건대로 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나.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추징은 당초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감면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실질은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감면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

6)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명의자나 거래의 형식,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는 그 실질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였다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징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박물관은 망 B이 설립한 이 사건 재단법인이 이를 소유·운영하여 온 것으로, 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위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재단법인이 그 부지와 그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그 부속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양도하게 된 것이어서 결국 경제적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위 재단법인과 원고등은 서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위 박물관의 운영난이 원고등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재단법인이 위 박물관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였다고 하여 원고등이 당연히 ○○○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박물관 용도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조○○

판사 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선 정 자 명 단

1. A

2. K

3. L.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28

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